

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민원상담
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 월 2 일

여 수 시 장

2022. 9. 2



여수시 조례 제1749호

붙임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1호“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며, 2호 ~5호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 · 해촉) 중 “할 때”를 “하는 경우”로 “때”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민원상담인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여수시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는</u>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u> 5. <u>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u> 	<p>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p> <p>-----</p> <p>-----</p> <p>-----</p> <p>-----.</p> <p>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은</u>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u>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u>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u>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인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해촉) ----- ----- --- 하는 경우-----.
1. 사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 ----- ---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3. -----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민원상담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 ----- 경우